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. 5. 12 선고 2013가단6993(본소), 2014가단2721(반소) 판결
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·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1. A

2. B

피고(반소원고)C

변론 종결2015. 3. 31.

판결 선고2015. 5. 12.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들에게,

가. 정읍시 D 대 330㎡ 중 별지 1 도면 표시 3 내지 6, 18, 17, 16,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

(나) 부분 30㎡ 지상 철골조 조립식 건물(등기부상 표시: 목조 함석지붕 단층 정미소) 30㎡를

철거하고, 위 (나) 부분 대지 30㎡를 인도하고,

나. 각 411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5. 2.부터 2015. 5. 12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
값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2014. 5. 2.부터 위 (나) 부분 대지 30㎡의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17,310원의 비율로 계산한
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(반소피고)들은 피고(반소원고)에게,

가. 정읍시 E 대 185㎡ 중 별지 2 도면 표시 7, 11을 연결한 선 지상에 위치한 담장을 철거하고, 별지
2 도면 표시 7, 11, 6, 7을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3㎡를 인도하고,

나. 공동하여 88,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4. 22.부터 2015. 5. 12.까지는 연 5%의, 그
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2014. 4. 21.부터 위 (나) 부분 대지 3㎡의 인도 완료일까지 공동하여 월 3,8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/5은 원고(반소피고)들이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
5. 제1항,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1. 본소 : 주문 제1항과 같다.

2. 반소 : 주문 제2의 가.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들은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에게

가. 정읍시 E 대 185㎡ 중 별지 2 도면 표시 9 내지 11, 7 내지 9를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5m를 인도하고,

나. 1,459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2014. 4. 21.부터 정읍시 E 대 185㎡ 중 별지 2 도면 표시 9 내지 11, 7 내지 9를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5㎡, 7, 11, 6, 7을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3㎡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,1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라. 770,000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.

가. 원고들은 2012. 5. 2. 정읍시 D 대 330㎡(이하 '원고들 소유의 토지'라고 한다) 및 그 지상 건물(이하 '원고들 소유의 건물'이라 한다)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연접한 정읍시 E 대 185㎡(이하 '피고 소유의 토지'라고 한다) 및 위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 정미소 120.6㎡(이하 '정미소'라고 한다) 전부를 2000. 6. 21.부터 소유하고 있다.

나.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원고들 소유의 토지 중 일부인 별지 1 도면 표시 3 내지 6, 18, 17, 16,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30㎡[이하 '이 사건 (나) 부분 30㎡'라 한다] 지상에 피고 소유의 2층 철골조 조립식 건물(등기부상 표시: 정미소) 30㎡가 위치하고 있었다.

다. 이 사건 (나) 부분 30㎡의 2002. 5. 2.부터 2014. 5. 1.까지의 임료는 합계 822,000원이고, 2014. 5. 2.경 현재 임료는 월 34,620원이다.

라. 한편 원고들 소유의 담장이 피고 소유의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7, 11을 연결한 선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, 원고들은 2012. 5. 2.경부터 피고 소유의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7, 11, 6을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3㎡[이하 '이 사건 (나) 부분 3㎡'라 한다)]를 점유하고 있다.

마. 이 사건 (나) 부분 3㎡의 2012. 5. 2.부터 2014. 4. 20.까지의 임료는 합계 88,257원¹⁾ 이고, 2014. 4. 21.경 현재 임료는 월 3,810원²⁾ 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이 없는 사실, 갑 제 1, 3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), 감정인 F의 각 측량감정결과, 이 법원의 감정인 G, H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,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(나) 부분 30㎡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,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(나) 부분 30㎡ 지상에 건축된 피고 소유의 2층 철골조 조립식건물 30㎡를 철거하고 이 사건 (나) 부분 30㎡를 인도하며, 이 사건 (나) 부분 30㎡를 점유,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취득한 2002.

5. 2.부터 2014. 5. 1.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 822,000원 중 원고들 각 1/2 지분에 해당하는 411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이후인 2014. 5. 2.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. 5. 12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부당이득으로 2014. 5. 2.부터 이 사건 (나) 부분 30㎡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료 상당액 중 원고들의 각 1/2 지분에 해당하는 각 월 17,3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들이 이 사건 (나) 부분 3㎡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에게, 별지 2 도면 표시 7, 11을 연결한 선 지상에 위치한 담장을 철거하고, 이 사건 (나) 부분 3㎡를 인도하며, 이 사건 (나) 부분 3㎡를 점유,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으로 공동하여 2012. 5. 2.부터 2014. 4. 20.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 88,2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. 4. 22.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. 5. 12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, 부당이득으로 2014. 4. 21.부터 이 사건 (나) 부분 대지 3㎡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료 상당액 3,8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피고는, 원고들이 피고 소유의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9 내지 11, 7 내지 9를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5㎡도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, 을 제5,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선내 (가) 부분 5㎡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시 피고는,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. 5. 2. 이전인 2004. 4. 21.경부터 2012. 5. 1.까지 이 사건 (나) 부분 3㎡를 점유, 사용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, 을 제5, 15호증의 각

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2012. 5. 2. 이전에도 이 사건 (나) 부분 3㎡를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마지막으로 피고는, 원고들이 피고 소유의 토지에 위치한 담장을 무단으로 철거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담장 설치비용 7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,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정훈

별지

1) 2012. 5. 2.부터 2013. 4. 20.까지(354일) 1㎡의 임료는 연 15,125원(= 121,000원/8)이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(나) 부분 3㎡의 임료는 44,007원(= 15,125원×3×354/365, 원 미만 버림. 이하 같다.)이다. 2013. 4. 21.부터 2014. 4. 20.까지 1㎡의 임료는 연 14,750원(= 118,000원/8)이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(나) 부분 3㎡의 임료는 44,250원(= 14,750원×3)이다. 따라서 2012. 5. 2.부터 2014. 4. 20.까지 이 사건 (나) 부분 3㎡의 임료는 88,257원(= 44,007원 + 44,250원)이다.

2) 1㎡의 임료는 월 1,270원(= 10160원/8)이므로 이 사건 (나) 부분 3㎡의 임료는 3,810원(= 1270원×3)이다.